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1.



박 왕 규 의원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왕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 할 수 있도록 명시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923009

발의일자: 2023. 01. 20.  
발의자: 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황국주, 임미연, 장호섭,  
정창근

##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나.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에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

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9. <생략>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경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홍분·환경 또는 마

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